

# 기안용지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문서기호<br>문서번호  | 운수 1200-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처리기간  | 1358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시정일자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보존여부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부<br>수<br>기<br>관  | 운수 1과장                 | 예산 담당과            |
|   | 운수 2계장                 | 예산 2 계장           |
|   | 기안 개입자                 | 직성용 01.9.5 (주 흥국) |
| 경·유<br>수·인<br>류·조   | 공고제 2016년 8월 11일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제 1 안 내부 경 제  | 자동차 대여 사업체 경영 예산 명령 공고 |                   |
| 제 1 고 통 부 대교 1540-13094 (01.8.31) 및 운수 1540-22447 (01.9.4)<br>에 관련입니다.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2. 자동차 대여 사업체 경영 예산 명령에 따라 불법 저임금 및 번폐<br>경영 차량의 일재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간 신문에 게재, 공고 고지<br>합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가. 개재일 : 01.9.14.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나. 게재지 : 韓國經濟에 의뢰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다. 소요 예산 : 全五拾伍萬伍仟人百圓 (₩ 536,000)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라. 산출근거 : 4단 × 40명 × 3,050원 = 489,000<br>$489,000 + 40,000$ (부 가세) = 536,000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라. 예산과목 : (관) 4670 고통 관광비 (항) 4671 고통 관광<br>(세항) 4672 운수 관리 (목) 224 수수료, 수선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5. 지출방법 : 청구에 의거 지출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020-1-5(A) 1  
1969. 11. 10. 5회

150mm < 200mm (2.5mm) 이내용지 100g/m<sup>2</sup>

3615

6. 3 13,000,000원 원 예금

첨부: 공고(안)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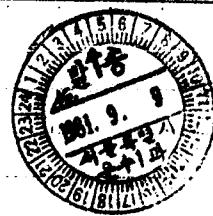
제 2 안

수신 관공서

제목: 공고 개재 미회

7. 법원 공고(안)과 같이 자동차 대여 사업체 경영 개선 명령에 따른  
불법 사업 및 번역경영 차량의 일재 신고 공고를 일반 신문에 게재 미회  
하오니 97.9.14자 신문에 공고될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공고(안) 2부. 끝.



3616

교통국장

시행률법서 공고 제 호

법무성사

81. 9. 8.

X

부록

자동차 대수 차량 세

불법 차량 차량·전체 강당 차량 문제 신고

자동차 대수 차량 세 문제를 위하여 1981. 9. 1 헌재의 불법

차량 차량 및 번별 경강 차량에 대한 문제 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 
설정하였으나 해당자는 박정 없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고 기간 : 1981. 9. 15 ~ 1981. 9. 30

2. 신고 장소 및 신고 방법

| 신고 장소             | 신고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고 차량에 대한 조치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불법 차입 회수대표자, 시설서  | 0. 1981. 10. 31까지 완전 적영화        |              |
| 차량·전체 입회소장, 운수 1과 | 조치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경강 차량 기입차주, 민족경찰서 | 0. 즉 기간까지 완전 적영화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부지 않은 업체의 차량은 민히<br>최소 또는 감차 처분 |              |

3. 신고 용지 배부 : 서울시 운수 1과에서 무료 배부

4. 기타 사항 : 상세한 것은 서울시 운수 1과에 문의 바랍니다

(문의 전화 : 722-8479, 725-7915)

1981. 9. 14.

시행률법서 장 박 영 수

3617